

의안번호	2210239
의 퇴 인	성일종의원
회 답 일	2025.5.15.
추 계 번호	25B26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함	의무규정
	안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안 제76조의2(기간 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적용)		

2. 상세 사유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¹⁾에 따라 사용자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²⁾에 근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

거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8호)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³⁾
 - 동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나,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8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현행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임신기간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8호)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3)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40호)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는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40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